

사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

(심사 보고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9. 10. 5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'99. 10. 5(의안 제50호)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으로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본 조례중 지나치게 강화된 부분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대상을 확대함(안 제17조)
- 나.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(안 제18조)
- 다.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로 보도록 함(안 제21조)
- 라.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별표로 정함(안 제22조)
- 마.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을 당초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협용하였으나 최대기준의 80% 정도에서 새로이 정함(안 제26조)
- 바.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최소분할면적을 최대한 완화

하여 정함(안 제28조)

- 사.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협행조례에는 총수와 높이에 따라 규정되었으나 높이 기준으로 단순화 함(안 제30조)
- 아. 건축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는 용벽 및 공작물에 대하여 용도별로 정하여 있었으나 용도별로 높이를 정함(안 제43조)
- 자.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별,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44조)

4. 법적근거

- 가. 건축법 개정(1999. 2. 8 법률 제5895호)
- 나. 건축법시행령(1999. 4. 30 대통령령 제16284호)

5. 전문위원검토요지

- 가. 99년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즈음하여 대폭적으로 손질을 한 개정안으로
- 나.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을 협행 본칙에서 별표로 처리하여 복잡성을 완화시켰으며
- 다.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규정하여 대상시설을 명확히 하였고
- 라.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였음.
- 마. 개정조례안 별표 11에 있는 “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”에서 나항의 공동주택은 협행 조례에는 “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구역에 한한다”라고 단서 규정을 두었으나, 개정조례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였음. 그 이유는 동 단서가 재량권을 남용할 빌미가 될 수 있어, 시행령에서 규정한

대로 단서 규정없이 단순화 시켰음. 준공업지역안에 공동주택 건축 가능 여부는 도내에도 각 시군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. 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을 완화하려는 수단으로 오해할 우려와 쟁점이 되어있는 대방지구의 해상으로부터의 경관 악화가 예상될 수도 있음. 그러나, 동 규정의 개정이 바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, 집행부에서 허가할 때에는 동 단서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, 이 부분의 개정이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 가능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함.

바. 따라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

. 질의 : 원안대로 의결하였을 시 환경 분쟁에 따른 민원과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은가?

. 답변 : 아파트 건립시 많은 민원 발생이 우려됨

7. 토론요지

. 규제개혁차원에서 모든 조건은 해제하여야 함

. 대방지구 뿐만 아니라 신항만 지구에도 20~30층의 아파트 가 들어설 우려가 있음.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)